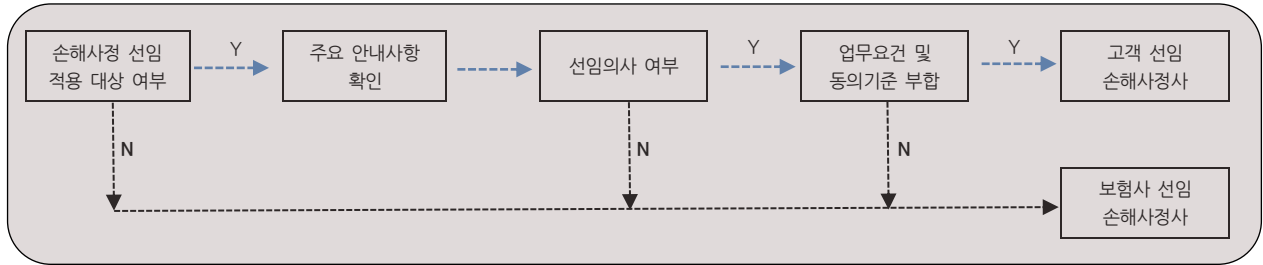


## 고객 선임손해사정사 업무 요건 및 선임 동의기준

### I. 손해사정 선임관련 주요 절차 및 안내 사항

#### 1. 주요 절차



#### 2. 손해사정 선임 주요 안내사항

손해사정 선임 적용 대상	<p>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손해사정 대상'이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 건을 말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손해사정선임권 안내	<p>보험계약자 등은 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별도로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회사는 동의 기준 부합여부에 따라 동의 기준을 결정합니다.</p> <p>그러나 다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선임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선임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li> <li>②회사의 재선임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재선임하지 않은 경우</li> <li>③선임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선임의사표시 기한을 연장한 후,선임관련 안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선임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li> <li>④고객의 선임의사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선임의사표시기한이 연장된 경우 10일 이내)선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li> </ul>
손해사정선임시 비용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보험계약자 등 부담 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회사와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li> <li>②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 선임의사를 통보하고,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이거나,회사가 보험금 청구접수 완료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li> </ul>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및 유의 사항	<p>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합의 또는 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철회하고 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p>

\*기타 사항은 [표1]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요망

## II. 고객선임손해사정사 업무 요건 및 선임 동의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업무 요건</p>	<p>1)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관련 법령 및 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다음 아래의 서류를 통하여 입증해야 하고,손해사정 협회 공시 내용을 통해 공시정보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종별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등록증 사본</li> <li>②손해배상보장예약증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사본</li> <li>③손해사정교육이수 여부 확인 서류</li> </ul> <p>2)손해사정사는 아래 사항을 업무 착수 전 동의하고 준수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표준 업무 기준'을 준수하여 손해사정서 작성 준수</li> <li>②회사의 보정요청사유(손해사정업무처리매뉴얼 별표4.보정요청사유와 동일) 항목과 관련한 보완정정서 작성 및 절차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준수해야 하며,주요 보정 요청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li> </ul> <p>가.계약관계 확인(정상계약여부,실효기간중 실효사고,부담보부위 발병확인 등)  나.고지의무 위반 확인(의무기록과 손해사정내용이 상이/직업고지 상이)  다.인과관계 및 기왕증 여부 확인 부실  라.약관 및 판례 등 오적용  마.경찰서,관공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 기준</p>	<p>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li> <li>2)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형법,변호사법,개인정보·신용정보 관리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li> <li>3)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li> <li>4)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li> <li>5)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시_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화해·중재 등),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li> <li>6) 보험회사가 선임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 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li> <li>7) 선임손해사정사가 고객 요청에 의한 선임손해사정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통해 안내된 회사의 비용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li> <li>8)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관련법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li> </ol>

